

○○○○검찰청

(전화번호)

제 호 . . .
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
제 목 상소권회복청구 검 사 ㉠
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
. . . 유죄() 판결선고가 있었던 바, 해당 판결에
대하여 상소함이 없이 상소제기기간이 경과되어 해당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다음
과 같은 사유로 「형사소송법」 제345조에 의한 상소권회복을 청구합니다.

다 음

210mm×297mm

(신문용지 54g/m²)